

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. 10. 23 선고 2020가단2359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]

전 문

원고A단체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10. 23.

주 문

1. 피고는 편무성에게 충남 홍성군 C 전 688m²에 관하여 2018. 10. 24.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접수 제2399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8. 10. 24. 피담보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 본문)

판사김지현

별지